

적절한 有效法人稅率 代用值의 모색

李 正 浩* · 全 圭 安**

《目 次》

I. 서 론	2.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
II.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 분석	V. 적절한 유효법인세율의 모색
III. 유효법인세율의 의미	VI. 새로운 지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
IV.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기준 연구 의 재검토	자본 비율
1.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	VII. 결론

I. 서 론

有效法人稅率(effective corporate tax rate, ETR)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세부담 능력(이익을 많이 이용한다)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Omer, Molloy와 Ziebart(1991), 이창우와 전 규안(1996)의 결과처럼 어떤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proxy)를 이용하는가가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유효법인세율 대용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효법인세율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에 관해서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기준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제Ⅴ장에서는 적절한 유효법인세율을 모색해 본다. 제Ⅵ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을 대신할 지표로 Wilkie와 Limberg(1993)에 제기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에 관해 알아보고, 제Ⅶ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博士

Ⅱ.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 분석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익이 유효법인세율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세제상보조금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비례(proportional)한다면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지만, 비례하지 않는다면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높다)는 것이 세제상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기(많기) 때문일 수 있다.⁽¹⁾ 즉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유효법인세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고 법인

$$\begin{aligned}
 (1) \text{ 유효법인세율} &= \frac{\text{과세표준} \times T}{\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ext{조세혜택액}) \times T}{\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1 - \frac{\text{조세혜택액}}{\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times T \\
 &= (T - \frac{\text{세제상보조금}}{\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end{aligned}$$

T: 법인세율

조세혜택액: 기업회계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표준과의 차이

세제상보조금: (조세혜택액 × T), 법인세제상의 보조액

위 식의 마지막에서 세제상 보조금이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낮기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을 가정하자.(이월결손금누적액이나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A 기업	B 기업
자 산	₩1,000	₩1,0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0	50
법인세율	40%	40%
세제상보조금	₩ 10	₩ 10
법인세	90*	20*
유효법인세율	36%	20%

세차감전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액뿐만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이익이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有效法人稅率의 變動性(variation)은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²⁾ 즉 미국에서의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유효법인세율에 큰 차이가 있고(즉,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이 크고),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유효법인세율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즉,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이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은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매우 낮거나 높은 극단치로 보고되고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법정법인세율에 근접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³⁾

3. 유효법인세율의 이용가능성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시에 분모로 사용되는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계산된 유효법인세율이 의미가 없다. 즉 기업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법인세율의 경제적 해석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할 때 분석기간중에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표본의 수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만을 표본에 포함시키거나 특정 산업만을 표본에 포함시키게

$$* W250 \times 0.4 - W10 = W90$$

$$W50 \times 0.4 - W10 = W10$$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기업은 W10이라는 동일한 세제상보조금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이 B기업에 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크기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 (2)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TROE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기자본}}$$

(3) Wilkie와 Limberg(1993), pp.63-68.

(4) Wilkie와 Limberg(1993), p.49.

되어 自己抽出偏倚(self-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4. 세무회계상으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회계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純營業損失(net operating loss, NOL)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무회계상의 결손발생으로 인한 세제상 혜택이 기록되지 않다가 결손의 후기이 월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제상보조금이 기록되어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기록된다. 그러므로 결손이 실제로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보조금이 낮게 기록되며 그 후에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보조금이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기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기업들이라도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결손 때문에 두 기업간의 유효법인세율이 달라져서 조세부담이 다른 것으로 기록되며, 한 기업내에서도 연도별로 조세부담이 실제와는 다르게 기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陰의 법인세를 보상해주지 않는 非對稱的 課稅(asymmetric taxation)제도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대칭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缺損의 遷及控除(tax loss carryback)나 後期移越(tax loss carryforward)을 인정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결손의 후기이월을 인정더라도 세무회계상으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과세가능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줄 뿐, 실제로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재무제표상에 결손발생으로 인한 미래의 조세혜택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 연도별로 정확한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무회계상 결손의 전기소급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후기이월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칭적 과세로 인한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⁵⁾ 만약 과거에 지급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결손의 전기소급공제가 인정된다면 유효법인세율은 음수가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법인세율이 음수인 기업이 양수인 기업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세부담의 기업간 비교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기간에 걸친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을 이용하거나 법인세와 이익의 평균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5)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5년간의 후기이월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1997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소급공제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소급공제기간은 1년이며, 환급세액은 전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계산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은 기업간에 조세부담을 비교하는데는 유용한 해결책일 수가 있지만, 한 기업내에서 기간별로 조세부담을 측정하는데는 유용한 해결책이 아니다.

기간별 또는 기업별로 조세부담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검증기간(test period)동안에 세무회계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표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자기추출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내재적 조세의 존재

유효법인세율은 明示的租稅(explicit tax)만을 고려하고 內在的租稅(implicit tax)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면 기업의 실제 총조세부담(total tax burden)은 유효법인세율보다 높다. 즉 유효법인세율에는 내재적 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는 투자(tax favored investment)를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내재적 조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는 적은 조세를 내게 되어 유효법인세율은 적게 계산된다.⁽⁶⁾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적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일지라도 내재적 조세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조세를 납부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공채나 보통주 등 내재적으로 과세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은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조세보다 적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별 또는 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경우에 내재적 조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수 있다.

내재적 조세가 존재할 때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자.

〈예제〉

〈표 1〉에서 *B*기업은 완전히 과세되는 기업으로 조세혜택을 못 받는 기업, 즉 조세부담 분석의 기준(benchmark)이 되는 기업이다. 반면에 *A₀*기업은 조세혜택을 받으나 내재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이며, *A₁*기업은 조세혜택을 받고 내재적 조세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조세혜택을 받는 *A₀*기업과 *A₁*기업은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조

(6) 조세혜택을 받는 투자의 경우는 투자자들에 의해 그 투자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세전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 투자자들은 낮은 세전수익률을 받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내재적 조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1〉 내재적 조세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1) 기 업	(2) TS_i	(3) R_i	(4) ETR_i	조세부담률		
				(5) 명시적 조세율	(6) 내재적 조세율	(7) 총 조세부담률
B	0%	25%	40%	40%	0%	40%
A_0	3	25	28	28	0	28
A_1	3	20	25	20	20	40

(자료원: Wilkie와 Limberg(1993))

(1) B : 완전히 과세되는 기업(fully taxable firm), 즉 조세혜택을 못 받는 기업(tax disadvantaged firm)으로 기준(benchmark)이 되는 기업이다.

A_0 :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tax advantaged firm)으로 내재적 조세(implicit tax)가 없는 기업

A_1 :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내재적 조세가 있는 기업

(2) TS_i : i 기업의 조세혜택(tax subsidy)비율, A_0 기업과 A_1 기업은 투자금액 W1당 3%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가정

(3) r^* : 세후균형수익률, 15%로 가정

t : 법정법인세율(40%로 가정)

R_i : i 기업의 세전수익률, $r^* = R_i(1 - t) + TS_i$ 이므로 $R_i = \frac{r^* - TS_i}{1 - t}$ 이다. 그런데 A_0

기업은 내재적 조세가 없으므로, 정의상 $R_B = R_{A0}$ 이다.

(4) ETR_i : i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ETR_i = \frac{R_i \cdot t - TS_i}{R_i}$

(5) 명시적 조세율(explicit tax rate): $\frac{R_i \cdot t - TS_i}{R_B}$, $i = A_0$ 또는 A_1 ⁽⁷⁾

(6) 내재적 조세율(implicit tax rate): $\frac{R_B - R_i}{R_B}$, $i = A_0$ 또는 A_1

(7) 총조세 부담률(total tax burden): 명시적 조세율(5) + 내재적 조세율(6)

세혜택을 받는다((2)열). 이 때 각 기업의 세전수익률은 (3)열과 같은데 A_0 기업은 B 기업과 세후수익률이 같고 명시적 조세만 있고 내재적 조세가 없으므로 세전수익률도 B 기업과 같다. 즉 $R_B = R_{A0}$ 이다. 그리고 각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4)열에 제시되어 있으며

(7) 완전균형(competitive equilibrium)하에서 위험조정후 세후수익률(risk-adjusted after-tax rate of return)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아비트리지 이익(arbitrage profit)을 얻을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균형하에서는 모든 기업의 총조세부담이 같게 되고 명시적 조세율이 $(R_i - r^*) / R_B$ 로 정의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균형 시장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기업마다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5)열~(7)열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의 총조세부담은 B 와 A_1 기업이 같고 A_0 기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B \rightarrow A_0 \rightarrow A_1$ 기업순으로 많은 조세부담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된다. 즉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면 기업의 조세부담을 잘못 측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효법인세율은 명시적 조세만을 고려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고, A_1 기업이 내재적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내재적 조세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논문으로 Wilkie(1992)가 있는데 稅前 自己資本利益率(pre-tax return on equity, PTROE)과 세제상보조금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세제상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은 감소된 세전 수익률의 형태로 내재적 조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완전경쟁적이고 제약이 없는 경제를 가정한 경우에 예측되어졌던 관계보다는 약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시장제약이나 체계적인 측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특히 순영업손실의 후기이월을 경험한 회사들의 조세혜택이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의 정보를 이용할 때는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6. 투자 · 재무의사결정시 유효법인세율의 유용성

Scholes와 Wolfson(1992)은 유효법인세율이 아무런 경제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균법인세율이 더 좋은 측정치가 되지만, 이것 역시 조세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투자나 재무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계법인세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⁸⁾ 한편 한계법인세율의 측정상의 어려

(8) Scholes와 Wolfson은 유효법인세율이 미래에 지급되는 이연법인세(deferred tax)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는 면세혜택을 받는 공채(municipal bond, 내재적 조세를 부담)의 이자수익을 무시하고, 차입금의 이자공제는 반영하므로 음의 유효법인세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각종 세액공제나 가속상각 등의 이유로 조세가 음이 될 때도 유효법인세율은 음이 된다. 또 Scholes와 Wolfson은 유효법인세율은 고객기준 재정거래전략(clientele-based arbitrage strategies)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고, 바람직한 고객기준 재정거래전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움을 지적하면서 기업간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거나 정치적 비용과 기업규모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유효법인세율이 더 적절한 측정치라는 주장도 있다.⁽⁹⁾ 그러나 이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을 옹호하는 주장은 유효법인세율을 실제로 계산하기 쉽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이지 유효법인세율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 지표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7. 의도적인 완충지대설정

Spooner(1986)에 의하면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지지만 기업들은 때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緩衝地帶(cushion)를 설정한다. 즉 기업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로 예상하는 조세액보다 세금을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은 실제 기업의 조세부담을 과대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유연화를 위해서는 당기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래에 이연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당기에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앞당겨 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경영자의 이러한 행동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III. 유효법인세율의 의미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유효법인세율을 정의해 보자.

$$\text{유효법인세율} = \frac{\text{조세}}{\text{기업의 조세부담능력}}$$

1. 유효법인세율의 분자

먼저 유효법인세율의 分子로 이용되는 '租稅'의 경우, 무엇을 租稅負擔으로 볼 것인가

(9) Omer, Molly와 Ziebart(1991), p.58.

〈표 2〉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 분석

1) 이익이 유효법인세율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액뿐만 아니라 이익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2) 이익이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은 조세혜택액의 분산뿐만 아니라 이익의 분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3) 유효법인세율의 이용가능성	• 유효법인세율 계산시 이용되는 이익이 0 또는 음이면 이용할 수 없다.
4) 세무회계상으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 유효법인세율이 과소계상 된다.
5) 투자·재무의사결정시 유효법인세율의 유용성	• 투자·재무의사결정시 유효법인세율은 유용성이 없다.
6) 의도적인 완충지대 설정	• 의도적인 완충지대를 설정하면 연도별 조세부담이 왜곡된다.

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며, 이용된 조세의 정의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연구결과는 법인세관련 정책 결정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 준조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연구결과는 준조세관련 정책결정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와 준조세의 합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조세부담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기업이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특정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법인세 납부액이 아니다. 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에 다음 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을 가감하는 것은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이 직전 연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유효법인세율의 분모

일반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의 분모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매출총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인데 이들을 분모로 이용하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매출총이익에 대한 설명은 매출총이익뿐만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외의 모

든 이익항목(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text{유효법인세율} &= \frac{(\text{매출총이익} - \text{순비용}^*) \times T - \text{세제상보조금}}{\text{매출총이익}} \\ &= T - \frac{\text{순비용}}{\text{매출총이익}} \times T - \frac{\text{세제상보조금}}{\text{세제상보조금} \text{ 매출총이익}}\end{aligned}$$

T: 법정 법인세율

* 순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특별손실 - 영업외수익 - 특별이익

위와 같이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받는 세제상의 혜택(즉, 세제상보조금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뿐만 아니라 비용구조(즉,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효법인세율이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매출총이익이 적더라도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크면 유효법인세율이 작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제〉

다음과 같이 기업 A의 매출총이익이 기업 B보다 더 적으나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더 큰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업 A	기업 B
매출액	100	100
매출원가	(60)	(50)
매출총이익	40	50
순비용*	(30)	(2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	30
법인세등	(5)	(15)
당기순이익	5	15

* 순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특별손실 - 영업외수익 - 특별이익

두 기업의 유효법인세율과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A	기업 B
유효법인세율:	$5 \div 40 = 0.125$	$15 \div 50 = 0.3$
$\left\{ \begin{array}{l} \text{법인세등} \\ \hline \text{매출총이익} \end{array} \right\}$		
$\frac{\text{순비용}}{\text{매출총이익}}$:	$30 \div 40 = 0.75$	$20 \div 50 = 0.4$

위 예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 A는 기업 B보다 매출총이익이 적지만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크므로 유효법인세율이 적다. 즉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편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text{유효법인세율}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times T - \text{세제상보조금}}{\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T - \frac{\text{세제상보조금}}{\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end{aligned}$$

T: 법정 법인세율

위와 같이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비용구조와는 관계없이 기업이 받는 세제상의 혜택(세제상보조금 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분모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이 달라진다.

〈어떤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경우의 해석〉

이용되는 분모	해석
① 분모가 매출총이익인 경우	매출총이익에 비해 세제상보조금이 크거나(즉 조세혜택을 많이 받거나), 순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② 분모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인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비해 세제상보조금이 크다(즉 조세혜택을 많이 받는다).

IV.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기존 연구의 재검토

제Ⅲ장에서 설명한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설명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 졌던 연구들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였던 기존 연구의 주요결과와 사용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1.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

<표 3>을 보면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간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다.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 조성하와 정규언(1992)을 제외하고는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에는 초대규모기업이 낮다. 특히 1990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권순철과 권순창(1993), 노현섭과 정규언(1995), 전규안(1996)에서 모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규모기업이 세제상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초대규모기업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성하와 정규언(1992)을 제외하고는 초대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낮으며, 나머지 기업들간에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소규모기업이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으면서도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낮지 않은 것은 소규모기업의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의 혜택정도(즉, 세제상보조금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뿐만 아니라 비용구조(즉,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세제상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지 않다는 것은 소규모기업의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규안(1996)에서는 실제로 소규모기업의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기존연구

연구주제	논 문	논문의 주요결과	사용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	조성표 (1990)	초대규모기업군은 상대적으로 법인세부담(명시적 조세)은 낮고 준조세부담(암묵적 조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지: 법인세등/매출총이익
	조성하와 정 규 언 (1992)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중규모기업, 대규모기업, 소규모기업순으로 높았다.	2가지: (법인세등+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등+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권순칠과 권순창 (1993)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2가지: 법인세등/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등/매출총이익
	노현섭과 정문현 (1995)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다.	4가지: (법인세등+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법인세등/매출총이익 외 2가지(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용)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	안숙찬 (1996)	부채비율과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유효법인세율과 역의 관계, 기업규모와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이익증가율은 유효법인세율과 관련 없다.	2가지: 법인세등/매출총이익 (법인세등 + 다음연도의 추납액 - 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전규안 (1996)	부채비율과 유효법인세율은 정의 관계,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은 유효법인세율과 역의 관계가 있다.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면 중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높고 초대규모와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낮다.	4가지: (법인세등 + 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법인세등/매출총이익 외 2가지(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용)

법인세등: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

2.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

앞의 〈표 3〉에서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 안숙찬(1996)과 전규안(1996)은 부채비율과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안숙찬(1996)처럼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면 부채비율과 유효법인세율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채를 조달할수록 이자비용이 많아지므로 순

〈표 4〉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의 결과

논 문	기업규모 구분기준	자료	유효법인세율의 분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매출총이익
조성표 (1990)	초 대 규 모 기 업 : 매출액기준 상위 10%, 기타 기업 업: 나머지 기업	1988 이용하지 않았음		초대 규모(기타기업) (0.0679) (0.0992)
조성하와 정규언 (1992)	매출액기준 (4등분)	1988 (0.3142) (0.3401) (0.3646) 1989 (0.3812)		소규모(초대규모<중규모<대규모) (0.6) (0.0837) (0.1051) (0.1059)
권순철과 권순창 (1993)	매출액기준 (10, 30, 30, 30)*	1990 (0.3033) (0.3167) (0.3367) 1992 (0.3633)		초대규모<대규모<중규모<소규모 (0.0533) (0.0767) (0.0833) (0.0967)
노현섭과 정규언 (1995)	매출액기준 (4등분)	1990 (0.2945) (0.3354) (0.3439) 1992 (0.3603)		초대규모<대규모<중규모<소규모 (0.0699) (0.0773) (0.0864) (0.1104)
전규안 (1996)	자산규모기준 (10, 30, 30, 30)	1990 (0.3177) (0.3280) (0.3602) 1994 (0.3685)		초대규모<대규모<소규모<중규모 (0.0532) (0.0785) (0.0848) (0.0866)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10~40%, 40~70%, 70~100%를 말함. 이하 같다.

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커져서 유효법인세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이 그 기업이 많은 조세혜택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아서 많은 이자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Bernard(1984)는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의 감세효과가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다음과 같이 부채를 이용하는 기업(A기업)과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B기업)이 있다고 하자

	기업 A (부채이용기업)	기업 B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이익	100	100
이자비용	<u>(20)</u>	<u>(0)</u>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0	100
법인세등(46%)	<u>(36.8)</u>	<u>(46)</u>
당기순이익	<u><u>43.2</u></u>	<u><u>54</u></u>

이 때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여 두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A (부채이용기업)	기업 B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
유효법인세율:	$\frac{36.8}{80} = 0.46$	$\frac{46}{100} = 0.46$
$\left\{ \frac{\text{법인세등}}{\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right\}$		

Bernard(1984)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기업 A)과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기업 B)의 유효법인세율이 같게 나오므로 부채의 사용여부가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기업 A)의 이자비용중에서 30%가 손금불산입된다면 기업 A의 유효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frac{(80 + 20 \times 30\%) \times 0.46}{80} = 0.4945$$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이용하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크다. 즉 부채를 이용할수록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한다.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異狀點(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이상점은 이익이 음인 기업뿐만 아니라 유효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의 조세부담은 相對的인 租稅負擔(relative tax burden)과 絶對的인 租稅負擔(absolute tax burde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효법인세율은 법인

세차감전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치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금액으로 표시되는 절대적인 조세부담도 중요하다. 유효법인세율이 1이상인 기업은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분모가 작아서 상대적인 조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절대적인 조세부담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효법인세율이 1이상인 기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천만원인 기업이 1.1천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1.1로 크게 표시되지만, 기업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표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 조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V. 적절한 유효법인세율의 모색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제Ⅲ장에서 알아 본 것처럼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분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에 분모로 이용되는 항목들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賣出總利益**나 **營業利益**을 분모(기업의 조세부담능력)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조세부담능력의 대용치로 이용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산업별로費用構造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은 매출원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산업은 영업외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이 때 기업별 또는 산업별 비용구조의 차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비용구조의 차이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제를 들어 보자.

〈예제〉

다음과 같이 비용구조(매출원가와 순비용의 구성비율)만 다르고, 다른 조건은 같은 두 기업을 가정해 보자.

	기업 A	기업 B
매출액	100	100
매출원가	<u>(60)</u>	<u>(40)</u>
매출총이익	40	60
순비용*	<u>(20)</u>	<u>(40)</u>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	20
법인세등	<u>(10)</u>	<u>(10)</u>
당기순이익	<u><u>10</u></u>	<u><u>10</u></u>

* 순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특별손실 - 영업외수익 - 특별이익

두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A	기업 B
유효법인세율:	$10 \div 40 = 0.25$	$10 \div 60 = 0.167$
$\left\{ \frac{\text{법인세등}}{\text{매출총이익}} \right\}$		

위의 예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기업은 비용구조(매출원가와 순비용의 구성비율)만 다를 뿐이고, 다른 면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유효법인세율이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經常利益을 조세부담능력의 대용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과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익개념보다 경상이익이 음인 기업이 가장 많으므로 경상이익을 이용하면 가장 많은 표본의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現金흐름을 조세부담능력의 대용치로 이용하는 경우, 현금흐름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지만, 과세당국 또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에서의 기중 현금흐름 또는 기말 현재의 현금잔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또는 영업활동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문제일 뿐이며 과세당국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금흐름을 조세부담능력의 대용치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법정 법인세율을 곱하여

구하는데, 이는 세법에서 課稅標準을 기업부담능력의 지표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에 가장 근접한 것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박춘래와 장호영(1994)의 연구에서도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가장 근접한 소득개념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⁰⁾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면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후의 항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면 매출총이익 이후의 항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면 매출총이익 이후의 비용구조와 조세혜택이 혼합되어 유효법인세율에 반영되는 반면에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면 조세혜택만 반영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하기 이전의 조세혜택(특별상각비 등)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동일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하기 전의 조세혜택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후의 조세혜택(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에 비하면 그 금액이 적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하여 논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비용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어느 정도의 조세혜택을 받는가이므로 유효법인세율을 구할 때 사용되는 분모로는 세제상보조금과 순비용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매출총이익보다 세제상보조금만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더 적절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할 때는 분모(기업의 부담능력)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VII. 새로운 지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

Wilkie와 Limberg(1993)는 유효법인세율대신에 조세혜택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인 稅制上補助金 對 自己資本 比率(tax subsidy on equity, TSE)을 제안하였다.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박춘래와 장호영(1994), p.287.

$$TSE = \frac{(t \cdot PTI - CTE)}{SE} = \frac{TS}{SE}$$

t : 법정 법인세율

PT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CTE : 당기의 세무회계상 법인세

SE : 자기자본

TS : 세제상 보조금

유효법인세율이 이의 ₩1당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반면에,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1당 조세혜택액을 측정한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이 높은(낮은) 기업은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낮게(높게) 계산될 것이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하는가를 측정한다면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조세혜택을 받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음의 유효법인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Wilkie와 Limberg(1993)는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유효법인세율보다 더 우월하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이론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집단내, 기간간의 비교시에는 유용하나,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나 집단간의 비교시 또는 세율이 변경된 기간간의 비교에는 유용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법인세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된 상황에 있는 한 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예제〉

세율이 변경되기 전과 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한 기업을 가정해 보자

	세율 변경전	세율 변경후
적용되는 세율	40%	3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00	₩1,000
자기자본	10,000	10,000
당기의 세무회계상 법인세액	300	250

이 기업의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과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세율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TSE)	1%	0.5%
유효법인세율	30	25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율이 인하되어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1%에서 0.5%로 감소하기 때문에 세율변경전보다 세율변경후에 조세상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은 30%에서 25%로 감소하였으므로 조세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바르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올바른 지표가 된다. 따라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도 절대적으로 옳은 지표는 아니며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규안(1996)에 의하면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유효법인세율과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VII. 결 론

지금까지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와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유효법인세율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보조금 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에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보조금 대 매출총이익과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즉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제상보조금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구조, 즉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기존 연구를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연구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경우에 낮고,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초대규모기업의 경우에 낮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규모기업과 초대규모기업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며, 소규모기업은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낮고, 초대규모기업은 순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높기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받는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비용구조에 의해서도 유효법인세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현금흐름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이 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조세부담능력을 나타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지표이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과 유사한 과세표준을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효법인세율의 분모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어떤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는가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선형적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參 考 文 獻

권순철, 권순창, 1993년 12월,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 5 호: 73-93.

노현섭, 정문현, 1995년 7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정치적 비용가설과 조세혜택가설의 검증, 세무학 연구 제 6 호: 85-114.

박춘래, 장호영, 1994년 12월,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회계학연구 제19 호: 275-297.

안숙찬, 1996년 10월,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 연구 제8호: 125-152.

이창우, 전규안, 1996년 3월,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working paper).

전규안, 1996년,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미간행 박사학 위 논문.

조성표, 1990년 9월,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계학 연구 제10호: 177-205.

조성하, 정규언, 1992년 상반기호, 기업규모와 정치적 비용: 정치적 비용가설의 검증, 고려대학교 경영연구 제26권 제 2 호:90-105

Bernard, Victor L., 1984, A Comment O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 75-78.

Omer, C. Thomas, Karen H. Molloy and David A. Ziebart, 1991,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 (Spring): 57-72.

- Scholes, Myron S. and Mark A. 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 Spooner, 1986,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September): 293-306.
- Wilkie, P.J., 1992,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Spring):97-116.
- Wilkie, P.J. and S.T. Limberg, 1993,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yers: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Spring):46-71.